

학 칙		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	
표준번호	학칙·학사 학사운영01	제정일	1969. 3. 1.
개정차수	139차	최근 개정일자	2021. 1. 28.

제9장 교과이수와 졸업

제40조(학점인정)

- ② 특별시험과 자격증 등에 의한 학점인정은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, 매 학기 취득학점 상한선에 제한받지 아니한다. <개정 98. 9. 1>, <개정 99.9.1>, <개정 2005.1.24>, <개정 2005.9.15.>, <개정 2018.2.22.>
- ④ 「병역법」에 의해 입영 또는 복무로 휴학 중인 자가 군 교육훈련 기관에서 과정을 이수하거나 방송·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원격수업을 이수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, 세부사항은 학사 규정에 따른다. <신설 2008.6.1>
- ⑤ 입학 전에 국내외의 고등학교와 대학 등에서 대학 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, 학점인정 절차와 범위 등 세부사항은 학사 규정에 따른다. <신설 2008.6.1>

학사 규정		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	
표준번호	학칙·학사 학사운영팀 02	제정일	1979. 03. 01.
개정차수	116차	최근 개정일자	2021. 1. 11.

제5장 시험·성적·학점

제2절 성적과 학점

제68조의2(군복무 중 취득한 학점인정) ① 「학칙」 제40조제4항에 따라 군복무 중 취득한 학점인정은 학기 당 6학점 이하, 연간 12학점 이하로 하고, 총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, 해당 학기 취득학점 상한선에 제한받지 아니한다. <개정 2014. 9. 30.>

②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P와 N으로 인정하며, 이수구분은 자유선택으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본 대학교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일 경우에는 학부(과)의 심의를 거쳐 자유선택 이외의 이수구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7.6.13.>

③ 군복무 중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재학기간 내에 교무처 학사운영팀에 학점인정신청서와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2010.1.18.>, <개정 2019. 1. 7.>

④ 교무처 학사운영팀은 제출된 학점인정신청 서류를 심사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점을 인정한다. <개정2010.1.18>

⑤ 군 복무 중 취득한 학점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의 결재를 받아 정한다.

⑥ 군복무경험 학점인정과정을 통하여 학점을 인정받고자하는 자는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기의 정해진 기간 내에 국방부에서 발행하는 군경력증명서와 학점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. <신설 2020.1.8.>

<본조 신설 2008.7.21>